

예 산 총 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0,747,746	12,622,432
일반회계	293,811,000	8,814,330
특별회계	126,936,746	3,808,102
기타특별회계	126,936,746	3,808,102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140,981	34,229
주차장특별회계	111,000	3,33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761,863	52,856
주택사업특별회계	91,795	2,75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5,975,977	3,179,279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68,100	5,043
치수사업특별회계	944,870	28,34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00,000	15,000
기반시설특별회계	1,000	3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16,241,160	487,23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779,29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9,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수 있다.